의안번호	제 199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7월 일 (제 341 회)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엄재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6월 23일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엄재창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9

발의연월일 : 2015년 6월 23일
발 의 자 : 엄재창, 임회무, 김영주
윤은희, 연철흠, 최광옥
강현삼

1. 개정이유

○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,

○ 광역시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된 건축분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신설 : 제2조의2
나.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규정 삭제 : 제19조 내지 제31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제4조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다. 합 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하였음.

라. 기　　타

(1) 입법예고 : 2015. 6. 8 ~ 2015. 6. 18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적용의 완화)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제4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”이란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” 영 “이라 한다)”를 “영”으로 한다.

제3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삭제한다.

제19조 내지 제31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제2조의2(적용의 완화)(신설)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제4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”이란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말한다.
제3조(설치) 「건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3조(설치) 「건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3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9조 ~ 제31조 (생략)	제3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(삭제) 제19조~31조 (삭제)
별지 3호 ~ 별지 7호 서식(생략)	별지 3호 ~ 별지 7호 서식(삭제)

관련법령 발췌

☐ 건축법

제4조(건축위원회) 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1. 건축분쟁전문위원회(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)
2. 건축민원전문위원회(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)
3. 건축계획·건축구조·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

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(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

☐ 건축법 시행령

제6조(적용의 완화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·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: 법 제2조제1항제11호, 제44조,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